

2026년 식품표시광고법 주요 변경 사항 알림

① 영양표시 의무대상 확대 시행

- 국민 알권리 강화를 위해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대상 확대가 단계적(3단계)으로 진행 중
 - 2026년은 영양표시 확대가 ①2단계 완료 및 ②3단계가 시작되는 시기

시행연도	1단계	2단계	3단계
2018	시행 : 시리얼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2019			
2020	시행 : 코코아가공품		
2021			
2022		시행 : 품목류 매출액 120억원 이상 영업소	
2023			
2024		시행 : 품목류 매출액 12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영업소	
2025			
2026		시행 : 품목류 매출액 50억원 미만 영업소	시행 : 업종별 매출액 120억원 초과 영업소
2027			
2028			시행 : 매출액 120억원 이하 영업소
대상	시리얼류 등 4개 추가	떡류 등 61개 추가	버터 등 77개 추가

- ① (2단계 추진 완료) 2026년 1월 1일부터 떡류 등 61품목 영양표시가 전면 시행되므로,
 -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61개 품목은 영양표시 의무 대상임 <대상 품목 붙임 1 참고>
- ② (3단계 추진 시작) 2026년 1월 1일부터 버터 등 77개 품목이 영양표시 대상 신규 추가 <대상 품목 붙임 2 참고>
 - (시행시기)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시행시기를 순차적으로 정하였으며, 2026년은 2022년 업종별 매출액 기준 120억원 초과하는 영업소가 영양표시 시행 대상임

기 준	시행시기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등	2026.1.1.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등	2028.1.1.

※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

- 다만, 영양표시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는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함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다.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라.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마.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식육 및 알류

61품목

- 떡류
- 당류가공품
- 두부류(두부, 유바, 가공두부)
- 묵류
- 식물성크림
- 다류 중 액상차
- 발효식초
- 소스류(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 카레(카레(커리))
- 향신료조제품
- 김치류(김치속, 배추김치)
- 절임류(절임배추 제외)
- 조림류
- 전분류(전분, 전분가공품)
- 밀가루류(밀가루, 영양강화밀가루)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기타농산가공품류(과·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
- 베이컨류
- 건조저장육류
- 양념육류(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 식육추출가공품
- 식육함유가공품
- 알가공품류(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액, 알기열제품, 피단, 알함유가공품)
- 산양유
- 어육가공품류(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기타 어육가공품)
- 젓갈류(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 건포류(조미건어포, 건어포, 기타 건포류)
- 조미김
- 기타수산물가공품

붙임 2

영양표시 확대 대상(3단계)

구분	식품유형	구분	식품유형
아이스크림 믹스류(5)	아이스크림믹스	농축유류	버터유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농축우유
	아이스밀크믹스		탈지농축우유
	샤베트믹스		가당연유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가당탈지연유
설탕류(2)	설탕	유크림류	가공연유
	기타설탕		유크림
당시럽류	당시럽류	버터류	가공유크림
올리고당류	올리고당		버터
	올리고당가공품		가공버터
포도당	-	유청류	버터오일
과당류	과당		유청
	기타과당		농축유청
엿류	물엿	유당	유청단백분말
	기타엿	유단백 가수분해식품	-
	텍스트린	유함유가공품	-
동물성 유지류	식용우지	한천	-
	식용돈지	기타동물성가공식품	-
	원료우지	곤충가공식품	-
	원료돈지	자라가공식품	자라분말
	어유		자라분말제품
기타동물성유지	자라유제품		
식용유지 가공품	모조치즈	추출가공식품	-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벌꿀류	벌집꿀
다류	고형차		벌꿀
표준형영양 조제식품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사양벌집꿀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조제식품	사양벌꿀	
식단형 식사 관리식품	고혈압환자용 식단형식품	로열젤리류	로열젤리
	한식메주를 사용한 한식간장		로열젤리제품
장류	정국장	화분가공식품	가공화분
	카레(커리)분		화분함유제품
조미식품	고춧가루	생식류	생식제품
	실고추		생식함유제품
	절임배추		즉석섭취·편의 식품류
농산가공 식품류	찐쌀	간편조리세트	
	효소식품	기타식품류	
식육가공품	갈비가공품		기타가공품
	식육케이싱		
	식육간편조리세트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12. 30.>

[시행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등: 2026년 1월 1일

나.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등: 2028년 1월 1일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제6조제1항 관련)

1.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캔디류, 빵류 및 떡류
- 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및 빙과
- 다.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라. 당류
- 마. 잼류
- 바. 두부류 또는 묵류
- 사. 식용유지류
- 아. 면류
- 자. 음료류: 다류(액상차, 고형차만 해당한다), 커피(액상커피, 조제커피만 해당한다),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및 기타음료
- 차. 특수영양식품
- 카. 특수의료용도식품
- 타. 장류: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및 기타장류
- 파. 조미식품: 식초류(발효식초만 해당한다), 소스류, 카레(커리),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향신료조제품만 해당한다)
- 하. 절임류 또는 조림류: 김치류(김치는 배추김치만 해당한다), 절임류 및 조림류
- 거. 농산가공식품류
- 너. 식육가공품류: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간편조리세트 및 식육함유가공품
- 더. 알가공품류
- 러. 유가공품류
- 머. 수산가공식품류
- 버. 동물성가공식품류: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기타 동물성가공식품만 해당한다),

곤충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및 추출가공식품

서.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어. 즉석식품류

저. 기타식품류

처. 건강기능식품

커. 가목부터 처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축산물로서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주류에 열량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등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추잉껌

2) 얼음류

3) 다류: 침출차

4) 커피(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커피원두에 향료만을 첨가한 조제커피만 해당한다)

5) 장류: 한식메주, 한식된장

6) 식초류: 희석초산

7) 향신료가공품: 천연향신료

8) 식염

9) 김치류: 김치(배추김치는 제외한다)

10) 주류

11) 포장육

12)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라.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마.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바.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식육 및 식용란

② 무당, 무가당 표시 제품 정보 제공 강화 시행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 무당, 무가당 및 이와 동일한 표현으로 당류를 강조표시한 제품의 경우, ①열량, ②감미료 사용 여부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함

① (열량 표시) 저열량* 또는 열량 감소**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강조표시 주변에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또는 저열량 제품이 아님 등을 표시하여야 함(14포인트 이상 활자크기)

* 저열량 : 식품 100g당 40kcal 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20kcal 미만일 때

** 열량감소 : 동일한 유형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유사식품을 대상으로 열량을 산출하여, 표준값과 비교하여 최소 25% 차이가 있어야 하며, 열량 차이의 절대값이 '저' 기준 값보다 커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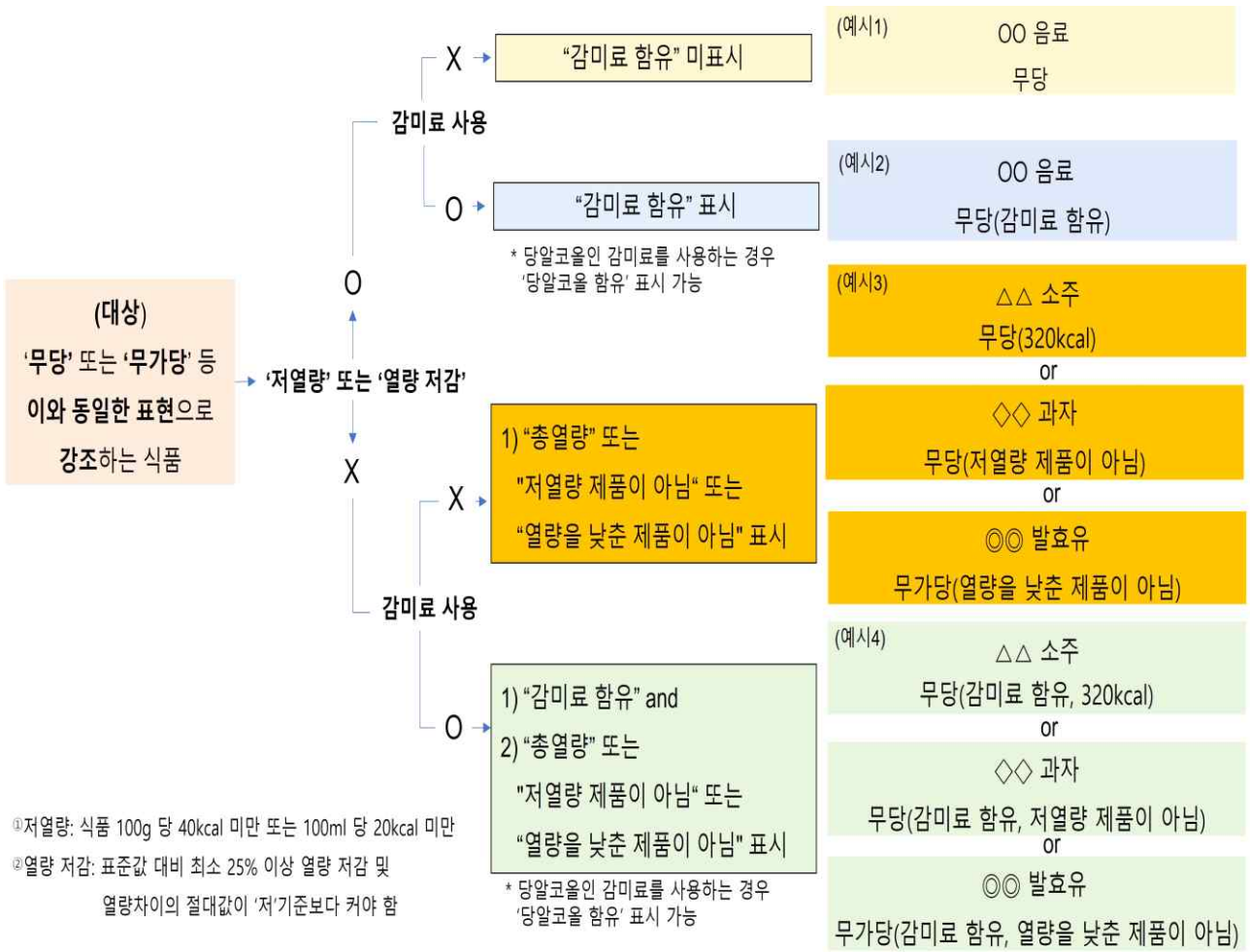
② (감미료 사용)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감미료 함유'를 '무당' 또는 '무가당'등 강조 표시 주변에 표시해야 함(14포인트 이상 활자크기)

※ 감미료 종류(22종)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감초추출물, 네오타, D-리보오스, 스테비올배당체, D-자일로오스, 토마틴, 효소처리스테비아,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D-소비톨액,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 당알코올(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D-소비톨액,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감미료 경우 '감미료 함유' 대신 '당알코올 함유' 표시 가능

<무당, 무가당 강조 식품 표시 흐름도>



3) 영양강조 표시기준

가) "저", "무", "고(또는 풍부)" 또는 "함유(또는 급원)" 등과 같은 용어 사용

(1) 일반기준

(가) "무" 또는 "저"의 강조표시는 (2)의 규정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중 "저지방"에 대한 표시조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

영양성분	강조표시	표시조건
열량	저	식품 100g당 40kcal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20kcal미만일 때
	무	식품 100ml당 4kcal미만일 때
나트륨/ 소금(염)	저	식품 100g당 120mg미만일 때 * 소금(염)은 식품 100g당 305mg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5mg미만일 때 * 소금(염)은 식품 100g당 13mg미만일 때
당류	저	식품 100g당 5g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2.5g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ml당 0.5g미만일 때
지방	저	식품 100g당 3g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1.5g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ml당 0.5g미만일 때
트랜스지방	저	식품 100g당 0.5g 미만일 때
포화지방	저	식품 100g당 1.5g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0.75g미만이고, 열량의 10%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0.1g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0.1g미만일 때
콜레스테롤	저	식품 100g당 20mg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10mg미만이고, 포화지방이 식품 100g당 1.5g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0.75g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5mg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5mg미만이고, 포화지방이 식품 100g당 1.5g 또는 식품 100ml당 0.75g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미만일 때
식이 섬유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3g 이상, 식품 100kcal당 1.5g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단백질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 식품 100ml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비타민 또는 무기질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5% 이상, 식품 100ml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7.5% 이상,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5%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5% 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나) "덜", "더", "감소 또는 라이트", "낮춘", "줄인", "강화", "첨가" 등과 같은 용어 사용

- (1) 영양성분 함량의 차이를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하여 백분율 또는 절대값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제품의 표준 값은 동일한 식품유형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유사식품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 (2) 영양성분 함량의 차이가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하여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식이섬유,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의 경우는 최소 25%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하고, 나트륨을 제외한 규칙 제6조 관련 별표 5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서 정한 비타민 및 무기질의 경우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 (3) (2)에 해당하는 제품 중 "덜, 감소, 라이트, 낮춘, 줄인"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차이의 절대값이 가)의 규정에 따른 "저"의 기준값보다 커야 하고, "더, 강화, 첨가"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차이의 절대값이 가)의 규정에 따른 "함유"의 기준값보다 커야 한다.
- (4) (1)~(3)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영양성분과 식품유형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비교강조표시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설탕 무첨가", "무가당"을 표시할 수 있다.

(1) 당류를 첨가하지 않은 제품

(2) 당류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원재료(꿀, 당시럽, 올리고당, 당류가공품 등.

다만, 당류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첨가물은 제외)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3) 당류가 첨가된 원재료(잼·젤리·감미과일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4) 농축, 건조 등으로 당함량이 높아진 원재료(말린과일페이스트, 농축과일주스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5) 효소분해 등으로 식품의 당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제품

라) 다음의 (1)부터 (3)까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

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가) (1) 및 (2)에 따른 나트륨/소금(염)의 "무" 강조표시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염 제품이 아님" 또는 "나트륨 함유 제품임"을 해당 강조표시 근처에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1) 염화나트륨, 삼인산나트륨 등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

(2) 나트륨염을 첨가한 원재료(젓갈류, 소금에 절인 생선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3) 나트륨염을 기능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재료(건조 해조류, 건조 해산물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마) 가) (1) 및 (2)에 따른 '무당', 다)에 따른 '무가당' 및 이와 동일한 표현으로 당류에 대해 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1) 감미료(감미료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포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미료 함유'를 해당 강조표시 주위(강조표시의 인접한 둘레)에 14포인트 이상 활자 크기(강조표시가 14포인트 미만인 경우 해당 강조표시와 동일한 활자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당알코올인 감미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미료 함유' 대신 '당알코올 함유'로도 표시할 수 있다.

(2) 가) (1) 및 (2) 중 '저열량' 또는 나) (1)부터 (3)에 따른 '열량 감소'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해당 강조표시 주위(강조표시의 인접한 둘레)에 14포인트 이상 활자 크기(강조

표시가 14포인트 미만인 경우 해당 강조표시와 동일한 활자 크기)로 표시해야 하며, 해당 강조표시가 주표시면에 있는 경우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하는 열량은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를 대신하여 '저열량 제품이 아님' 또는 '열량을 낮춘 제품이 아님'을 해당 강조표시 주위(강조표시의 인접한 둘레)에 14포인트 이상 활자 크기(강조표시가 14포인트 미만인 경우 해당 강조표시와 동일한 활자 크기)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하는 열량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 (3) '무당', '무가당' 및 이와 동일한 강조표시가 주표시면에 2회 이상 반복되어 있는 제품은 소비자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주표시면에 가장 큰 강조표시 주위(강조표시의 인접한 둘레)에 (1), (2)를 표시해야 하며, 그 외의 강조표시 주위(강조표시의 인접한 둘레)에는 (1), (2)에 따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표 4]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 첨가물

식품첨가물의 명칭	용도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감초추출물	
네오탐	
D-리보오스	
스테비올배당체	
D-자일로오스	
토마틴	
효소처리스테비아	감미료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D-소비톨액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3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두

□ 배경

- 알레르기 유발물질 중 ‘대두’ 해당 시장명칭 추가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물질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하여 영업자에게 안내 필요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24.11.14., '26.1.1. 시행)

□ 현황

- (알레르기 표시)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에 따라 ‘대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의무 대상
 - ‘대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분류 명칭에 따라, 콩, 백태, 노란콩, 검정콩 등 다양한 시장명칭 등 이명 존재

✓ (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콩, 백태, 청태, 노란콩, 검정콩, 흑두(黑豆), 서리태, Soy bean, Black Beans

□ 알레르기 표시 영향

- (대두범위 확대) 기존 이명 이외 ‘쥐눈이콩’, ‘서목태’, ‘약콩’ 추가로 ‘대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알레르기 표시대상 범위도 확대
 - 다만, 상기 ‘쥐눈이콩’, ‘서목태’, ‘약콩’의 경우 대두가 아닌 ‘여우콩’의 이명과도 동일함에 따라 영업자 혼선 초래 가능
- (표시대상 구분) ‘대두’ 학명(*Glycine max* (L.) Merr. 등)과 ‘여우콩’ 학명(*Rhynchosia volubilis*)은 다르므로,
 - ‘쥐눈이콩’ 등 대두와 동일 이명인 경우에는 영업자가 학명을 확인하여 ‘대두’인지 ‘여우콩’인지 확인 후 표시 필요

□ 식품원료 목록 개정 내용

- '대두'의 기타명칭에 '쥐눈이콩, 서목태, 약콩'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에 '여두'의 기타명칭으로만 정하고 있던 '쥐눈이콩, 서목태, 약콩'을 '대두'의 기타명칭으로도 포함

명칭	기타명칭 (시장명칭)	학명 또는 특성	사용부위 (생약명)
종전	콩, 백태, 청태, 노란콩, 검정콩, 흑두(黑豆), 서리태, Soy bean, Black Beans	<i>Glycine max</i> (L.) Merr. / <i>Dolichos soja</i> L. / <i>Glycine</i> <i>hispida</i> (Moench) Maxim.	잎, 씨앗
	대두	콩, 백태, 청태, 노란콩, 검정콩, 흑두(黑豆), 서리태, Soy bean, Black Beans	잎, 씨앗
→ 개정			
개정	콩, 백태, 청태, 노란콩, 검정콩, 흑두(黑豆), 서리태, Soy bean, Black Beans 쥐눈이콩, 서목태, 약콩	<i>Glycine max</i> (L.) Merr. / <i>Dolichos soja</i> L. / <i>Glycine</i> <i>hispida</i> (Moench) Maxim.	잎, 씨앗
	대두	콩, 백태, 청태, 노란콩, 검정콩, 흑두(黑豆), 서리태, Soy bean, Black Beans 쥐눈이콩, 서목태, 약콩	잎, 씨앗
→ 개정			
명칭	기타명칭 (시장명칭)	학명 또는 특성	사용부위 (생약명)
여두	쥐눈이콩, 서목태, 약콩	<i>Rhynchosia</i> <i>nulubilis</i>	열매
명칭	기타명칭 (시장명칭)	학명 또는 특성	사용부위 (생약명)
여우 콩	여두, 쥐눈이콩, 서목태, 약콩	<i>Rhynchosia</i> <i>volubilis</i>	열매

4 당알코올 함유 제품의 주의사항 표시 관련(시행일 : 2026년 1월 1일)

1

선적용

Q1.

개정된 규정을 '25년부터 선적용 가능한지

- 개정 규정은 시행일(2026.1.1.) 이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시행일 이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는 현행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다만, 시행일 이전이라도 소비자 정보 제공 차원에서 사실에 입각하여 개정된 '당알코올' 및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 표시와 주의문구 등을 추가로 표시하는 것 자체는 영업자 책임 하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표시대상

Q2.

주요 원재료로 사용되었으나 당알코올류 함량이 10%미만인 경우에는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 주의문구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 주요원재료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당알코올류가 10%미만이라면, 당알코올 관련 주의사항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현행 규정에 따라 시행일(' 26.1.1.)전까지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해당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과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 건강기능식품도 표시 대상인지

- 건강기능식품인 경우 당알코올 사용과 관련한 주의사항의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 다만,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주의가 필요한 경우 영업자 책임하에 추가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드립니다.

Q4.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율표시가 가능하므로 최소판매단위 포장에 아닌 설명서에만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 건강기능식품인 경우 당알코올 사용과 관련한 주의사항의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주의가 필요한 경우 영업자 책임하에 추가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설명서에 따로 기재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Q5. 식품첨가물도 표시 대상인지

- 해당 규정은 식품과 축산물에 적용되며, 식품첨가물(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 포함)은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Q6. 복합원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복합원재료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도 표시하여야 하는지

- 최종제품에 총 당알코올류의 함량이 10%이상인 경우 해당하는 모든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Q7.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당알코올의 경우, 복합원재료를 100%
으로 보았을 때는 당알코올 함량이 10% 이상이지만, 최종제품
기준으로는 10% 미만인 경우, 표시 대상인지**

- 최종제품 기준으로 당알코올을 10% 미만 함유한 제품은 주의문구 표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Q8.

**최종제품에 폴리글리시톨시럽을 사용한 함량이 10%인 경우
표시 대상인지, 폴리글리시톨시럽 내 소비톨과 말티톨의 함량이
10% 이상인 경우 표시 대상인지**

- 최종제품에 사용한 폴리글리시톨시럽에 함유된 소비톨과 말티톨로써 실제 함량의 총합이 10% 이상인 경우 표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Q9.

"당알코올" 표시 및 괄호로 당알코올의 종류·함량 표시는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지 정보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지

- “당알코올” 표시 및 괄호로 당알코올의 종류·함량 표시 위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Q10.

제품명에 당알코올 명칭이 포함된 경우 주표시면의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와 원재료명의 당알코올 명칭 및 함량 표시에 모두 '당알코올'을 표시하여야 하는지

- “당알코올” 표시 및 괄호로 당알코올의 종류·함량 표시 위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품명에 당알코올 명칭이 포함되어 주표시면에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를 하는 경우,
- 주표시면 또는 원재료명의 당알코올 명칭 및 함량 표시에 ‘당알코올’을 함께 표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표시면과 원재료명 표시 두 곳에 모두 표시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11.

원재료명란에 원재료명 표시와 함께 “당알코올” 표시 가능 여부

- “당알코올” 표시 및 괄호 안에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원재료명란에 함께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Q12.

“당알코올 함유 제품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는 원재료명란에 해당 원재료명 표시 근처에 표시하는 것인지, 원재료명란 근처의 알레르기 표시란 주변에 표시하는 것인지

- “당알코올 함유 제품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는 기존 알레르기 표시방법과 동일하게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표시방법

Q13.

“당알코올” 표시와 괄호로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 표시도 바탕색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하는지

- 개정 규정에 따라 “당알코올 함유 제품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을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예시)에서도 해당 문구만을 바탕색과 구분되게 표시하고 있으므로, ‘당알코올’ 문구와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은 바탕색과 구분되게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14.

주의문구에 “당알코올” 표시와 괄호로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 표시를 함께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 개정 규정에 따라 “당알코올 함유 제품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을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당알코올” 표시 및 괄호로 당알코올의 종류·함량 표시 위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함께 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안) 당알코올(D-소비톨 4%, D-말티톨 10%), “당알코올 함유 제품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안) “당알코올(D-소비톨 4%, D-말티톨 10%) 함유 제품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Q15.

당알코올의 함량 표시 시 허용 오차는?

○ 당알코올의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 별도의 허용오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최종 제품 내 남아있는 당알코올의 함량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적절

Q16.

당알코올 함량의 총합이 10% 이상인 경우, 미량 당알코올도 표시하여야 하는지

○ 최종제품에 총 당알코올류의 함량이 10%이상인 경우 해당하는 모든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함

Q17.

액체 제품의 당알코올류 함량은 정제수를 빼고 계산하여야 하는지

- 원재료란 최종 제품에 들어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 제품에 물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이를 포함하여 최종 제품에 대한 중량 비율로서 각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함

Q18.

말티톨시럽 10% 함유하고, 함유한 말티톨시럽 내의 말티톨 실제 함량이 50%인 경우 환산하면 말티톨 5%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말티톨시럽 10%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 당알코올류를 10% 이상 함유한 제품에 표시를 하여야 하며, 말티톨시럽의 경우 말티톨의 실제 함량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말티톨 실제함량이 50%인 말티톨시럽을 10% 함유하여 최종적으로 말티톨을 5% 함유한 경우는 표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소비자 정보제공 목적으로 영업자 책임하에 주의문구 추가 표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1안)과 같이 말티톨시럽 자체 명칭과 함량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안)과 같이 이를 구성하는 ‘말티톨’의 명칭과 함량 표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안) 당알코올(말티톨시럽 10%)

2안) 당알코올(말티톨 5%)

Q19.

말티톨시럽을 10%이상 함유한 경우 말티톨과 소비톨의 실제 함량을 계산한 값을 합해서 말티톨시럽으로 표시해야하는지
성적서에 있는 말티톨과 소비톨을 그대로 계산해서 표시해야 하는지

- 1안)과 같이 말티톨시럽 자체 명칭과 함량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안)과 같이 이를 구성하는 ‘D-말티톨, D-소비톨’의 명칭 및 함량 표시도 가능

1안) 당알코올(말티톨시럽 25%)

2안) 당알코올(D-말티톨 23%, D-소비톨 2%)

Q20.

자일리톨 5%, 에리스리톨 5%가 함유된 제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표시 가능한지

1안) 당알코올(자일리톨5%, 에리스리톨5%)

2안) 당알코올(자일리톨5%), 당알코올(에리스리톨5%)

- ‘당알코올(자일리톨5%, 에리스리톨5%)’ 또는 ‘당알코올(자일리톨 5%), 당알코올(에리스리톨5%)’ 두 가지 표시 방법 모두 가능하며, 참고로 시행규칙 별표 2 규정의 예시에서는 당알코올(자일리톨5%, 에리스리톨5%) 표시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1.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는 경우,
여러 개의 당알코올 사용한 경우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표시하지 않고 당알코올만 묶어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 당알코올류가 다수인 경우 1안)과 같이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당알코올류를 합하여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2안)과 같이 전체 당알코올류를 합하여 표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1안) 당알코올(A 30%, B 20%), 원료 C, 당알코올(D 15%, E 3%)

2안) 당알코올(A 30%, B 20%, D 10%, E 5%), 원료 C

Q22.

원재료명란에 원재료명 표시하면서 '감미료'와 '당알코올' 둘 다 표시하고자 할 때 표시방법

- 원재료명 표시와 별도로 “당알코올” 표시 및 괄호 안에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원재료명란에 함께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은 괄호 안에 표시하여야 하므로 원재료명란에 ‘감미료, 당알코올(폴리글리시톨시럽60%, 에리스리톨 20%)’의 표시는 각기 감미료, 당알코올 등 다른 종류의 원재료명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표시안	표시 가능 여부
원재료명: 폴리글리시톨시럽(감미료, 당알코올) 60%, 에리스리톨(감미료, 당알코올) 20%	불가 -"당알코올"을 표시하고 괄호로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함
원재료명: 감미료, 당알코올(폴리글리시톨시럽 60%, 에리스리톨 20%)	불가 -감미료와 당알코올이 각기 다른 종류의 원재료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적절하지 않음.
원재료명: 폴리글리시톨시럽, 에리스리톨....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 "당알코올, 감미료(폴리글리시톨시럽 50%, 에리스리톨 20%) 함유 제품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가 -표 4에 해당하는 첨가물은 명칭과 용도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당알코올 주의문구 표시 시 감미료를 함께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원재료명: 당알코올[감미료(폴리글리시톨시럽 60%, 에리스리톨 20%)]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 "당알코올 함유 제품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능
원재료명: 감미료(폴리글리시톨시럽 60%, 에리스리톨 20%)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 당알코올(폴리글리시톨시럽 60%, 에리스리톨 20%), "당알코올 함유 제품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능

Q23.

'무당' 또는 '무가당' 강조하는 경우 해당 강조표시 주변에 감미료 함유 여부를 나타내는 '당알코올 함유' 표시 시 괄호로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 표시할 수 있는지

- “당알코올” 표시 및 괄호로 당알코올의 종류·함량 표시 위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당’ 또는 ‘무가당’ 강조 표시 주변에 감미료 함유 여부를 나타내는 ‘당알코올 함유’ 문구와 함께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당알코올(말티톨 12%) 함유

Q25.

영양성분표시 내 당알코올 함량이 표시되어 있다면, 영양성분 표시한 당알코올 함량을 백분율로 환산하였을 때와 주의사항 표시 관련 당알코올 함량 표시(%)의 수치는 같아야 하는지

-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함에 있어 함량표시는 사실에 입각하여 최종 제품 내에 남아있는 것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함

⑤ 한약 처방명의 유사명칭 확대 및 일부금지(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 명칭'을 확대하고,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 또는 칸나비디올(CBD) 등의 명칭이나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를 금지

종
전

한약처방명	한약처방명과 유사명칭
공진(신)단	공진환, 공진원, 공신단, 공신환, 공신원, 공심환, 공진액, 공보환, 공지환, 공침환, 공본환
경옥고	경옥정, 경옥보, 경옥환, 정옥고, 경옥액, 경옥생고, 경옥진고
익수영진고	익수영진경옥고차환
사군자탕	사군자전, 사군자탕환, 사군자환
사물탕	사물전, 사물탕환, 사물환, 사물액
쌍화탕	쌍화전, 한방쌍화차, 쌍화액
십전대보탕	십전대보전, 십전대보액, 십전대보원, 십전대보초, 활력십전대보원, 대보초
녹용대보탕	녹용대보전, 녹용대보액, 녹용대보즙, 녹용기력대보, 녹용대보진액, 녹용대보정, 대보초, 녹용대보초
(가감)보아탕	(생 락)
총명탕	총명전, 총명차, 총명환, 총명대보중탕, 총기차, 총명액
귀비탕	귀비전, 귀비차, 귀비액
육미지황탕(환)	육미지황전, 육미지황원, 육미골드, 육미지황액
팔미지황탕(환)	팔물전전, 팔미지황원, 팔미지황액
(인삼)고본환	인삼고본주, 고본주, 고본술, 고본액
(연령)고본단	고본주, 고본술
(현토)고본환	고본주, 고본술
고본건양단	고본주, 고본술
궁귀교애탕	궁귀교애전, 궁귀교애초, 궁귀초
소체환	속편환
육군자탕	육군자전
오적산	오적산전
생맥산	생맥산전, 생맥차
익모환	-
진해고	-
(청간)명목환	-
(우황)청심원	청심환
굴피탕	-
맥문동탕	-
팔물(진)탕	-
이중탕	인삼탕
연년익수불로단	-
오자원	-
오자연중환	-
(소아)귀룡(용)탕	-
기타	성장환, 생치원, 제통원, 정기산, 혈기원, 신기원, 천보환, 청패원액, 청패액, 청패원, 은교산, 성장액

→ 개
정

한약처방명	한약처방명과 유사명칭
공진(신)단	공심환, 공보환, 공지환, 공침환, 공본환
경옥고	정옥고
익수영진고	익수영진경옥고차환
사군자탕	사군자전, 사군자탕환, 사군자환
사물탕	사물전, 사물탕환, 사물환, 사물액
쌍화탕	쌍화전, 한방쌍화차, 쌍화액
십전대보탕	십전대보전, 십전대보액, 십전대보원, 십전대보초, 활력십전대보원, 대보초, 십전대보진, 대보환, 대보단
녹용대보탕	녹용대보전, 녹용대보액, 녹용대보즙, 녹용기력대보, 녹용대보진액, 녹용대보정, 대보초, 녹용대보초, 녹용대보원, 녹용대보환
(가감)보아탕	(현행과 같음)
총명탕	총명전, 총명차, 총명환, 총명대보중탕, 총기차, 총명액, 총기원, 더총명, 총명단
귀비탕	귀비전, 귀비차, 귀비액
육미지황탕(환)	육미지황전, 육미지황원, 육미골드, 육미지황액
팔미지황탕(환)	팔물전전, 팔미지황원, 팔미지황액
(인삼)고본환	인삼고본주, 고본주, 고본술, 고본액
(연령)고본단	고본주, 고본술
(현토)고본환	고본주, 고본술
고본건양단	고본주, 고본술
궁귀교애탕	궁귀교애전, 궁귀교애초, 궁귀초
소체환	속편환
육군자탕	육군자전
오적산	오적산전
생맥산	생맥산전, 생맥차
익모환	-
진해고	-
(청간)명목환	-
(우황)청심원	청심환
굴피탕	-
맥문동탕	-
팔물(진)탕	-
이중탕	인삼탕
연년익수불로단	-
오자원	-
오자연중환	-
(소아)귀룡(용)탕	-
기타	성장환, 생치원, 제통원, 정기산, 혈기원, 신기원, 천보환, 청패원액, 청패액, 청패원, 은교산, 성장액

나. 공진(공신) 또는 경옥과 한약 제형명 등을 포함하여 조합된 명칭, 이 경우 제형명 등은 탕, 전, 주, 약주, 약로, 당장, 고, 산, 환, 수환, 밀환, 호환, 농축환, 단, 차, 정, 병, 조, 선, 편, 교냥, 충제, 류침고, 침고, 전고, 액, 구, 원, 초, 즙, 진액, 술, 보를 말한다.

(예시) 경옥+한약제형명 등 : 경옥탕, 경옥생고, 경옥단 등

공진+한약제형명 등 : 공진탕, 공진보감, 공진옥단 등

다. 탕, 전, 주, 약주, 약로, 당장, 고, 산, 환, 수환, 밀환, 호환, 농축환, 단, 차, 정, 병, 조, 선, 편, 교냥, 충제, 류침고, 침고, 전고, 액, 구, 원, 초, 즙, 진액, 술, 보 제형으로 제조된 제품으로서 공진(공신) 또는 경옥을 포함하여 조합한 것으로써 한약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명칭

(예시) 탕형태의 경옥00, 환형태의 00공진 등

※ 해당 자료는 영업자 편의를 위해 2025.6.9.기준으로 만든 자료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